"UR농산물협상과 낙농육우산업의 대책"(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재 옥**

목 차

Ⅰ. UR농산물협상의 개념
1. UR협상의 대두배경과 농산물 협상
2. 농산물협상의 추이

Ⅱ. 농산물협상의 현황
1. 쟁점별 주요국가의 기본입장
2. 우리나라의 기본입장
3. 농산물 그룹의장의 초안
4. 외국의 CL, OL 제출현황

Ⅲ. 향후 협상의 전망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협상전망
2.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Ⅳ. 낙농육우산업의 조건과 대책
1. 산업의 여건
2.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크나큰 전환기적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하겠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은 이미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외지향적인 공업위주 수출주도형의 불균형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농어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과도한 인구의 이농, 탈농을 유발하여 대도시의 주택, 교통, 공해문제등이 심각해 지고 이것은 다시 경제전체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극도로 노령화되어 농업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으므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산업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요즈음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소홀에서도 기인하였겠지만 선진국들이 오랜동안 힘써 왔던 농업하부구조개선과 투자가 미흡하여 아직도 우리 농업이 절대우위와 저생산성의 농업생산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를 전후한 세계 무역현황의 변화와 미국의 경제사정악화등 우리농업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대미무역수지흑자의 확대는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 해소노력과 맞물려 한미 통상마찰과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수지여건의 개선과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포괄적으로 농산물을 수입제한해 올 수 있었던 근거조항으로서 GATT 18조 B항을 졸업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초부터의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지역주의화 경향과 새로운 무역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1987년부터 시작된 UR 협상으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금번의 농산물협상은 교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의 개혁을 목표로 모든 농업보조금의 감축문제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당면한 심각성은 개방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빠를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아직도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급속하게 수입을 개방하는 것은 농업의 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의 UR농산물협상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품목을 NTC대상품목으로 하여 보조금 감축과 수입개방에서 제외가 되도록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이나 감축이행기간의 연장을 얻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자원부존여건에 알맞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품목으로의 작목체계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생산기술개발과 품질개선으로 수입대처능력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리농업의 앞날에 중요한 의미를 주게될 UR농산물협상의 개방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언급 분석하고, 특히 낙농육우산업의 여건을 설명한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UR 농산물협상의 개황

1. UR 협상의 대두배경과 농산물협상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의 교역질서는 큰 변화를 통하여 다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총 생산규모나 무역규모에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아 오던 미국과 EC 주요국가들의 경제력은 현저하게 약해진 반면 서독,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과 무역량 증대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독, 일본등의 무역수지흑자는 큰 폭으로 증대한 반면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등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세계경제선두의 재편과정에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EC는 1992년을 목표로 확대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카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이미 추진

또는 계획하에 있는 것이다.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전후 자유무역에 의한 세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왔던 갓트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으로서 2,000년대의 세계교역를 규범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대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두배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제일의 난제로 꼽히고 있는 농산물협상은 그만한 교역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의 식량위기(Food Crisis)상황은 1980년대에 와서는 교역위기(Trade Crisis)상황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즉 1970년대를 식량이 부족하여 식량조달이 매우 어려웠던 시대라고 한다면 반대로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과잉생산과 재고누증, 재정지출확대 그리고 농산물 무역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잉재고의 처리를 위해 농산물 수출국간에 이른바 "수출보조금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는 크게 왜곡되었다.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의 왜곡에 대한 원인이 수출국들은 수입국의 과도한 수입장려과 농업보전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수입국들은 수출국간의 경쟁적인 수출보조금지급에 있다는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지만, 농산물 무역문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협상에 의하여 세계농업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농산물협상이 핵심협상이 되었던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해소노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전반적인 세계 농산물시장의 불황으로 농산물 수출이 부진해지고 막대한 농업보조와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보조금의 지급으로 농업재정적자가 누증되자 일면으로는 쌍무적인 협상으로 농산물 수출개방압력을 무역상대국에 넣게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큰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는 갓트의 다자간협상에 의하여 세계의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그들이 아직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

〈표-1〉 농산물, 열대산품그룹의 협상목적 및 특별 고려사항

구 분	농 산 물 그 룹	열 대 산 품 그 룹
협상목적	· 농산물무역의 자유화 확대 ·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이 보다 강화되고 효율화된 GATT 규정 및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가공, 반가공등의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열대산품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이들의 완전한 자유화 달성
특별사항	· 수입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 접근 개선 · 농산물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의 보조금 및 기타 조치의 원인파악과 이것이 부정적효과의 점진적 완화를 포함하여 동조치 적용에 관한 법률강화를 통해 농산물교역의 경쟁조건 개선 · 한편 국제협정을 고려하여 농산물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상의 규제 또는 장벽이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 함.	· 체약국단은 대부분의 개도체약국에 있어 열대산품교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여 동분야 협상의 시한 및 결과이행에서는 공식적 종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잠정적 또는 한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협상의 일반원칙을 특별히 고려.

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력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협상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 농업의 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 수립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2. 농산물협상의 추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초부터의 세계 농산물의 구조적인 과잉생산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짐은 물론 농산물 무역에 대한 GATT의 규율은 공산품분야와는 달리 많은 예외적인 조치를 두고 있으며 구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농산물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장질서의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농산물 문역상의 새로운 질서확립과 국제무역의 신분야로 등장한 서비스, 지적소유권등의 협상을 위해서 GATT 체약국 각료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선언과 함께 동 협상의 목적 및 일반원칙 등을 밝힌 푼타 델 에스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에 나타난 농산물 협상그룹 및 열대산품 협상그룹의 협상목적 및 특별 고려사항을 보면 (표1)과 같다.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에 따라 1987년초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1990년 10월까지 25차에 걸친 공식회의와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 농업보호측정장치(AMS) 작업단회의의 수시개최 그리고 여러번에 걸친 수출입국간 비공식회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각국의 특수한 입장과 국내적인 정치, 사회적인 민감성 때문에 동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가국이나 협상의 목표인 "농산물교역의 자유화 확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세계 농산물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가격하락 요인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이로 주요의제인 보조금감축 및 국경조치완화등에 대한 의견차이를 아직도 좁히지 못했다.

1988년 12월에는 2년여동안 진행되어온 UR 농산물 협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의견조정후 중간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중간평가회의가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농산물협상의 목표설정에 있어 농업관련 보조금의 완전철폐(Elimination)을 주장하는 미국과 상당한 정도의 감축(Substantial Reduction)을 주장하는 EC와의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후 4개월간의 GATT중재와 각국의 의견조정으로 1989년 4월 제네바에서 재개된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농산물협상의 중간평가 합의문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UR 농산물협상은 전반기 2년간의 협상을 정리하고 후반기 2년간의 실질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중간평가 합의문에서는 농산물협상의 장기목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계를 수립한다는 데 두고 이를 위해서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GATT규범을 제정하고 농업보호 및 지지수준을 상당하고 계속적으로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중간평가 합의문에서는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첫째, 각국의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특정정책 및 조치별로 협상에 의해 삭감해 나가는 방안, 둘째, 총량보호측정장치(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s)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 셋째 위2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단기목표로서 농업보호 및 지원수준을 현수준에서 동결(standstill)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보조금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Progressive) 감축하자는 것과 일관성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중간평가 합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농산물교역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1989년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2개국이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표시하고 토론하였으나 대부분의 의제에서 수출입국간에 의견만 노출되는

결과여서 협상의 추진이 별무하였다. 따라서 1990년 초부터는 협상의 촉진을 위해서 가장 의견이 노출되는 국가, 또는 주요 협상국가간에 비공식화의 위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6개월간의 비공식협상에서는 GATT사무국이 작성한 요약표(Synoptic Table)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각국이 작성한 자문자답서(Auto-Clarifi-cation Table)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었으나 결국 의견조정에는 실패하였다.

1990년 7월에는 각국의 현격한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시한을 5개월정도 남겨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의장의 재량하에 합의문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의장초안은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만이 크게 반영된 방향에서 작성되었던 관계로 1990년 7월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다시 의견이 노출되어 향후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데만(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 합의하고 추가적인 협상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의장초안에서는 국별 보조금현황및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현황표(Country List)와 국별 보조금 감축 및 자유화계획서(Offer List)를 각각 1990년 10월 1일과 10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country list와 offer list를 기초로 하여 10월, 11월동안 이해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을 해 나가며 미합의되고 있는 협상원칙에 관해서도 논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농산물협상을 비롯한 15개분야의 협상은 12월 브리셀에서 각료급 NTC 회의를 개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짓는다는 계획하에 있다.

Ⅱ. 농산물협상의 현황

1. 쟁점별 주요국가의 기본입장

4년여에 걸친 농산물협상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국내농업보조금의 감축, 국경조치의 완화, 수출보조금의 감축, 동식물 검역제도의 개선, 개도국 우대조치, 그리고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 Non-Trade Concerns)등이다. 이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보조금 감축

구 분	기 본 입 장
미 국	· 모든 국내농업보조금을 신호등식 접근방식에 따라 구분(철폐, 감축, 허용대상으로) · AMS를 통한 감축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원조치의 10년내 철폐 · GATT 규정에 철폐, 감축, 허용대상정책 명시
Cairns그룹	· 미국의 입장과 유사하나 조건부 허용대상 정책 제시 · 카나다는 TDE를 통한 감축 주장
E C	· 철폐대상 정책의 설정에 반대 · SMU를 통한 보조금 감축 · 구조적 과잉, 시장왜곡품목(곡물, 쌀, 설탕 등)만 감축 대상
일 본	· 수출보조금의 우선적인 감축 · 농업의 특성, 농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고려 · PSE를 통한 감축에 이의 제시(농업정책의 다양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함)

나. 국경보호조치 완화

구 분	기 본 입 장
미 국	·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와 관세상당액의 감축 · 초기 쿼타(initial quota)를 이행기간 동안 점차 확대 · 현행 관세수준의 인하 및 양허폭 확대
E C	· 관세화 범주내에서 재균형(re-balancing) 주장 · 부족불지급 제도도 관세화의 대상 · 관세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정요소(corrective factor) 도입
Cairns그룹	·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 · 관세 상당액 감축 및 저율의 관세양허를 위해 공식 적용 인하 · 초기 쿼타의 증량은 미국의 입장과 유사
일 본	· 원칙적으로 관세화 반대 · 국민기초식품과 GATT 11조 적용대상품목의 관세화 곤란
스위스	· NTC의 적절한 반영을 전제로 한 관세화 수용

다. 수출보조금 감축

구 분	기 본 입 장
미 국	· 급속한 수출보조금의 감축 · 부족불지급은 국내보조로 인정 · 정부재정지출 또는 보조금 수혜품목의 양으로 철폐이행의 기준 · 식량원조에 대한 조보금은 철폐대상에서 제외
Cairns그룹	· 새로운 수출보조금의 도입금지 및 현행 수출보조금의 10년내 완전철폐 · 수출보조금의 감축이행 기간에는 톤당 수출보조금과 보조대상품목의 양을 동시 규제
E C	· 원칙적으로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를 포함한 총체적인 감축주장 · 수출보조금의 철폐 반대(점진적인 감축)
일본, 스위스 북구,	· 수출보조금의 철폐

라.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구 분	기 본 입 장
미 국	· 동식물검역에 대한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야 함. · CODEX, OIE, IPPC 평가지침 활용 · 모든 규정, 조치, 승인사항은 내국민 대우
Cairns그룹	· 동식물검역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됨에 우려 표명 · 규제조치는 위험 허용수준에 의해서 결정
E C	· 필요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적용 가능 · 질병 안전지역의 인정
일본 북구	· 각국의 위생 및 지리적 여건, 식생활 관습의 차이를 고려하여 규제조치 인정

마. 개도국 우대조치

구 분	기 본 입 장
미 국	· 농산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개도국 혜택 확대 – 최저 개도국 : 폭 넓은 우대조치 – 선발 개도국 : 경제적 능력 또는 농업분야의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기여 요구
케언즈그룹	· 개도국의 차별적 우대 인정 – 이행조치에 필요한 시행기간 연장 – 수출개도국 우대(대선진국 시장 확대) – 수출과 무관한 국내정책과 관련된 정부지원조치 허용 – 발전정도에 상응한 개도국의 기여 바람직
E C	· 개도국의 발전정도 및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차별적 대우 허용 – 농업분야가 비교적 발달된 개도국에 개도국 우대원칙의 일률적 적용 반대
일 본	· 개도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농업 및 농산물무역의 중요성 인정 · 개도국 우대 인정

바.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일 본	북 구	스 위 스	한 국
기본입장	기본식량의 100% 자급		· 최소시장 접근보장 · 최소농업 유지	· 최소시장접근보장 · 기초식품의 최저자급을 유지
NTC중 강조사항	식량안전	환경	식량안전, 환경, 고용유지	식량안전, 환경, 고용유지, 지역 균형개발의 종합적 고려
주요관심품목	쌀	일부곡물 및 낙농제품	다수품목(곡물, 축산물, 과실, 채소류 등)	다수식품(곡물, 축산물, 과실, 채소류 등)
NTC의 반영방법	· 국경보호조치의 유지 · 생산감축 및 생산성 향상유도로 국내보조금감축	· 각 협상양식에서 적절히 반영	· 국경보호조치의 유지 단, 최소시장접근보장 · 국내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지수준 감축	· 국경보호조치의 유지 단, 최소시장접근보장 · 최저자급율 범위내 국내보호조치유지

2. 우리나라의 기본입장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의 자유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국내농업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주요농산물의 보호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산물의 계속적인 수입제한 근거의 마련이 어려운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입장과 협상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전체적으로 GATT의 교역자유화를 지지해야 할 입장이나 농산물분야만은 국내농산물보

호를 위해 최대한 예외조치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은 90년대초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여타 개도국과의 공동방도를 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UR농산물 협상은 미국, EC등 수출강대국 주도로 추진됨으로서 수입국 농업에 대한 예외적 보호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농산물보호를 위해서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에 대한 수출제한, 개도국 우대조치 유예기간 허용등에 관한 사항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목표 및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협상목표

·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상이익의 균등한 반영

·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를 GATT 규정에 명백히 반영

· 최대한의 농산물 수입제한 및 농업보호 근거 확보

· 개도국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 및 정책선택의 탄력성 확보

나. 제안내용

· 농업의 특수성 및 농산물 교역자유화의 한계인정

· 세계 농산물교역 왜곡에 대한 수출국 책임 강조

· 식량안보 및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유지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허용

  – 최저자급율 유지 및 최소시장 접근보장

· 관세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NTC는 제외

· 현행 수량제한조항인 11조 2(C)조항 운용조건 완화

· 위생검역규제의 국제기구 기준남용시 각국의 식관습, 환경여건, 기술수준의 차이 고려

· 합의사항 이행시 개도국에 유예기간과 자율성 부여

3. 농산물그룹 의장 초안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향후 얼마남지 않은 실질협상의 골격 내지는 합의원칙을 의장의 재량하에 1990년 7월초 작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토의분위기는 의장초안이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만이 크게 반영되었다 하여 수출국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였다. 의장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의장초안에 대한 논의가 1990년 7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있었으나 농산물수출국인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의장의 합의초안을 협상의 기초(basis)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EC는 그들이 주장해 왔던 보조금의 총체적 감축(global approach), 관세화 과정에서 보정요소 사용등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 의장초안을 단지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s a means to intensity the negotion)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등은 식량안보등 수입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수량규제와 보조금 지급 허용을 주장하였다. 결국 TNC 회의에서는 의장초안을 향후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에만 합의하고 보조금현황표(country list)와 보조금감축 및 수입자유화 계획서(offer list)를 각각 10월 1일과 10월 15일까지 제출하기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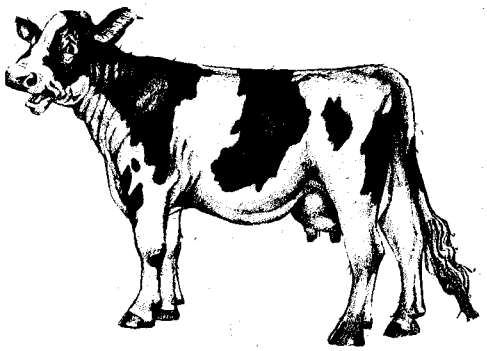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